

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 이라 한다)과 주식회사 한화(이하 “한화” 라 한다)는 한국 콘텐츠산업 발전 및 국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(이하 “본 협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진흥원과 한화가 한국 콘텐츠산업 발전 및 국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제2조의 불꽃축제 행사 개최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내용)

- ① 진흥원과 한화는 한화가 주관(또는 주최)하는 “서울세계불꽃축제”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.
- ② 한화가 행사 기간 중 대중음악 공연 및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을 개최할 경우에는, 진흥원은 대중음악 공연 참가 뮤지션 지원 등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한화는 대중음악 공연 및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에 필요한 무대 및 제반 시설을 지원하기로 한다.
- ③ 전항과 관련하여, 진흥원과 한화는 대중음악 공연 지원 등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.

제3조 (협약이행)

진흥원과 한화는 본 협약의 내용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한다.

제4조 (협약의 효력)

본 협약은 진흥원과 한화가 본 협약서에 모두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, 진흥원과 한화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제5조 (협약의 해석)

본 협약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흥원과 한화가 서로 합의하여 이를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라 이를 해석하기로 한다.

제6조 (협약의 변경)

본 협약의 내용은 진흥원과 한화가 서로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

제7조 (비밀유지)

- ① 진흥원과 한화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하여 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협약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② 진흥원 또는 한화가 전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, 위반한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조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, 진흥원과 한화는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, 진흥원과 한화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8월 30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(270171-0012826)
원장 송성각

주식회사 한화
(110111-0002959)
대표이사 박재홍

한국콘텐츠진흥원

주식회사 한화